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74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’22.1.13 시행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(’22.1.13 시행)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책지원관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0조부터 제92조” 를 “제102조부터 제104조” 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.

③ 정책지원관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
시행한다.